

■ 계좌간 (자동)이체 약관 (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용) 개정(안)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(안)   |
|--|---|
| <p>계좌간 (자동)이체 약관 (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용)</p> <p>제1조~제3조 (생 략)</p> <p>제4조 (출금)<br/>① (생 략)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신 설)</span></p> <p>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(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이체금액에 미달 하면 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③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, 수표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.</p> <p>④ 이체지정일(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영업일) 이 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에 이체 됩니다.</p> <p>제5조. (이체일)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생 략)</span>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신 설)</span>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신 설)</span>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신 설)</span></p> <p>제6조 (생 략)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신 설)</span></p> | <p>계좌간 (자동)이체 약관 (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용)</p> <p>제1조~제3조 (좌 동)</p> <p>제4조 (출금)<br/>① (좌 동)<br/>② 자동이체 대금은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 17시까지 입금할 경우에 이체 처리 합니다.</p> <p>③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(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이체금액에 미달 하면 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④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, 수표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.</p> <p>⑤ 이체지정일(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영업일) 이 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에 이체 됩니다.<br/>다만,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.</p> <p>제5조. (최초개시일)<br/><span style="margin-left: 150px;">(좌 동)</span></p> <p>제6조 (좌 동)</p> <p>제7조 (출금우선순위)<br/>같은 날에 이체 대상이 여러건 있을때, 다른 자동이체가 우선하여 처리 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8조 (손해배상 및 면책)<br/>①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<br/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9조 (약관의 변경)<br/>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br/>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,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,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</p> |

| 변<br>행  | 개<br>정 (안)   |
|---|--|
| <p>제7조 (준용)<br/>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, 관련 예금,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 | <p>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10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</p> <p>①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</p> <p>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.</p> |